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3. 25 선고 2024가단578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변 론 종 결 2025. 2. 11.

판 결 선 고 2025. 3. 25.

주 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2지분에 관하여 2020. 11.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각 8,583,3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58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 C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833㎡의 1/4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342,41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 C은 원고에게 3,342,4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D과 E 사이에 2020. 11.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E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F')은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09165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7. 3. 13. 'E은 F에게 23,037,179원 및 그 중 22,376,718원에 대하여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7. 6. 10.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은 '이 사건 채권').

나. F은 2024.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E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H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개별 부동산은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번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1980. 6. 8. 사망하였다. 망 H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I과 자녀인 피고들 및 E이 있었고 그 법정상속분은 I 6/21, 피고 C 6/21, 피고 D 및 E 각 4/21, 피고 B 1/21이다.

라. I이 2017. 12. 20.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 I의 법정상속분이 피고들 및 E에게 상속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및 E의 법정상속분은 피고 C 15/42, 피고 D 11/42, E 11/42, 피고 B 5/42이 되었다.

마. 피고들 및 E은 2020. 11. 19. '이 사건 1, 2번 부동산은 피고들이 각 1/3지분을 공유하고, 이 사건 3번 부동산(당시는 합병 전 면적인 833㎡)은 피고 C이, 이 사건 4번 부동산1)은 피고 D의 단독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 또는 분할협의서').

바. 2020. 11. 23. '1980. 6. 8.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1, 2번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앞으로 각 1/3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은 이 사건 3번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D은 이 사건 4번 부동산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상속등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이 2020. 11. 19.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과 이 사건 1, 2번 부동산 중 각 1/12지분에 관하여, 피고 C과 이 사건 3번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피고 D과 이 사건 3번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각 망 H 및 I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58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피고 C은 3,342,4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피고 D은 E에게 이 사건 3번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E과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망 H가 사망한 1980. 6. 8.경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각 상속등기를 위해 형식적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던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해야 한다.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1980. 6. 8.경이거나 적어도 E의 상속포기각서가 작성된 2012. 3. 1. 무렵에는 E과 피고들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망 H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E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1, 2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0. 11. 23. '1980. 6. 8.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 같은 날 '2020.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이 사건 3, 4부동산에 관하여도 2020. 11. 23. '1980. 6. 8.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상속등기는 이 사건 분할협의서를 원인서류로 첨부하여 이루어졌다.

④ 이 사건 각 상속등기는 H가 사망한 지 이미 40년이 지나서야 H의 사망을 원인으로 마쳐졌다. 망 H의 배우자 I도 이미 그 전인 2017. 12. 20. 사망하였다. 위 등기시점 또는 망 I의 사망시점에 이르기까지 망 H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37년 이상 상속인들 사이에 아무런 분할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에 속한다.

⑤ E은 2012. 3. 1.경 피고들에게 망 H 및 I의 재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상속포기각서는 망 H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관련 협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⑥ 원고는 'I이 2017. 12. 20. 사망하였으므로 그 전에 이루어진 E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고, 2020.

11. 19.에 한 이 사건 분할협의로서 기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갈음하는 새로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분할협의를 망 H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망 I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아니다.

⑦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이 사건 분할협의서는 이 사건 각 상속등기를 위해 절차상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2020. 11. 19.'에 실제 망 H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 H의 상속인들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거나 E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를 한 것은 1980. 6. 8.경이거나 늦어도 2012. 3. 1. 무렵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2024. 8. 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판사 백소영

별지

1)당시는 익산시 J 전 833㎡, K 답 957㎡, L 답 605㎡, M 답 922㎡이었으나 2022. 3. 18. 위 4필지가 모두 이 사건 4번 부동산으로 합병되었다.